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

A Study of the Economic Valuation of Rural Women's Labor*

- Agricultural Work and Household Work -

농촌생활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유 소 이

농업연구사 최 윤 지

생활지도관 조 현 숙

농업연구관 김 경 미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Post doc. : So-Ye You

Researcher : Yoon-Ji Choi

Senior researcher : Hyun-Sook Cho

Senior researcher : Kyung-Mi Gim

◀ 목 차 ▶

I. 서론

II.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평가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rural women's labor by measuring labor value economically.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pplied four methods : replacement cost method individual function, replacement cost method generalist, opportunity cost method and shadow wage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ime used for agricultural work and household work by rural women were 5.3 hours and 3.8 hours each.

Corresponding Author: So-Ye, You,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88-2 Seodun-dong, Kyunggi-do, Suwon, 441-853, Korea Tel: 82-31-299-0482 Fax: 82-31-299-0453 E-mail: syyou86@hanmail.net

* 본 연구는 2002년도 농촌진흥청 박사후 연구과정 사업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2) According to the methods used, the amounts of valuing rural women's labor were varied and ranged from 23,000 won to 43,000 won per day.

This study might help recognize the degree of rural women's labor contribution to the household income of farm households and improve the socio-economic status of rural women through showing the productivity of the rural women's labor.

주제어(Key Words):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 쉐도우임금추정법(shadow wage method), 전문가대체비용법(replacement cost method individual function), 총합적대체비용법(replacement cost method generalist)

I. 서론

현대의 농업이 상업농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번기·농한기의 구분이 사라져 가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 농작업 유형에서도 남녀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농촌생활연구소, 1998). 반면, 경제발전전략이 도시화·공업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낮아졌고, 사회·경제적으로 농업·농촌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들 중 하나는 광범위한 농촌노동력의 도시유출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여성화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들 수 있다(박현채, 1984; 정영일 1984; 김영옥, 2001).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부부중심의 가족농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¹⁾. 이처럼 농촌노동력이 고령화·여성화되었다는 것은 농촌여성이 수행하는 농업노동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가구와 달리 농촌가정은 생산과 소비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사활동을 하는 중에도 농사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수행하던 가사활동을 중단하고 농사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에서 겪는 현실이다(김인숙,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여성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비중과 시간의 증가에 비하여 가정에서의 역할, 즉 가정내 가사노동에 대한 비중이나 역할은 감소되지 않았으며 단지 농업노동의 증가로 인한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를 보이는 정도이다(농촌진흥

청, 1999). 따라서 농촌여성들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촌여성들의 농업노동 참여 비중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농촌진흥청, 1999)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만의 책임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시간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노동 참여로 인해 창출되는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여성의 노력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가정의 재생산을 위한 가사노동의 기여도 역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재산권 소유 등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농촌여성들은 과중한 노동부담과 역할에 비해 사회적 지위는 낮게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여성들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1) 2000년 현재 15세 이상 농가여성은 193만명, 여성농업종사인구는 152만명으로 전체 농업인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노동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영농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 2000; 김영옥, 2001).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 여성농업인에 관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김영옥, 양승주, 2000; 김이선, 1997; 김영옥, 김이선, 1999; 이호철, 최수영, 2001; 정기환, 1997) 여성농업인은 양적인 규모의 팽창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역할 측면에서도 중요인력으로 자리매김 해 왔다. 또한 여성이 농업에 많은 노동력을 투자함으로써 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많은 연구와 통계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김주숙, 1979, 1981, 1982, 1985; 농림수산부, 1979, 1985, 1988; 이미경, 1983; 조형, 1981; 최계석, 1988; 한국여성개발원, 1984).

지 금액으로 환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종 사고 및 손해 배상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최윤지, 유소이, 최현자,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내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던 현실에 직면할 때 이들의 기여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아울러 미래 농업경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가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실질적인 지위향상과 가정생활보호 및 각종 생활장애 해소와 경제분배의 불평등화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가경제내에서 여성농업인이 기여하고 있는 노동시간을 화폐가치로 추정하여 맞벌이 주부로서의 여성농업인의 위상정립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와 실제소득과의 관련성을 밝혀 농업노동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평가

무보수 여성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경제학적 접근방법은 주로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배분을 중심으로 1960년대의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한 신가정경제학파의 발전으로 인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가정은 소비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인적자본에 시간을 투입하여

최종소비재를 생산함으로써 궁극적인 만족을 얻는다고 주장하여 가사노동이 생산활동을 밝히고 있다(Becker, 1965). 이들은 국민경제분석에 가계생산함수론을 도입하여 가사노동가치를 강조하였는데, 시간의 개념을 경제학적 분석에 도입하여 시장재와 시간의 결합이 가계 또는 가족구성원의 효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생산물(Household Commodities)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Berk, 1980). 그리고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를 상품화 하여 소비하기까지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시하여, 가사노동의 생산적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계를 하나의 생산단위로 파악하게 하는 계기를 가져왔으며, 가사노동의 생산활동과 그 가치를 가시화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시간배분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가정경제학적 접근은 Mincer(1962)와 Gronau(1977)에 의한 것이 그 시초이며, 그 중 Gronau(1977)는 가계행동분석의 중요한 모델인 미국 신가정경제학파의 기본적 입장을 시간배분에 적용하였다. 그후에도 시간배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는데 Bryant(1990)에 이르러서는 시간배분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전개가 정리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도 1968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간사용에 관해 미시적·거시적 측면에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여성들의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하여 이러한 가치를 사회 전반에 인식시키고자 한 것으로 주로 가정학에서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주로 주부들의 시간사용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가사작업의 간소화를 위한 실험연구에 치중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구주제를 더욱 세분화하고 정교한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등 커다란 진전을 보여 왔다. 더 나아가서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는 가정관리학 뿐만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노동과학 등 여러 영역에서 가정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시간사용을 파악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외숙, 이기춘, 1988).

이처럼 무급노동의 생산성에 관한 논의는 재화와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도록 정비해 주는 과정으로서의 노동을 파악하여 상품의 사용가치 또는 효용 가치를 부가 또는 창출한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은 시장노동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가사노동시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인에게 지불된 임금만큼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명된다는 것이다(문숙재, 1990). 이런 의미에서 무급노동에 대한 화폐가치 평가는 경제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무급노동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필수적이며, 이와 같은 경제적 평가를 시작으로 하여 무급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지급은 대부분 자신이 수행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성과급이나 업적급에 의해 투입된 시간과 관계없이 일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그 일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에 대한 가치평가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Matsushima(1981)는 화폐적 가치산정의 근거로 시간을 언급하였으며, 시간자원이 결합재(integrative resources)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인간의 활동을 영위하게 하며, 활동에 사용된 시간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기회비용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에 종사한 여성농업인들의 시간 또한 기회비용의 개념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노동의 가치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생산활동에 대한 물질적 투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생산된 산출물의 질이 다양하며, 가격을 부여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은 실체를 가진 유형의 재화와 달리 가족의 인적생활에 대한 부가가치나 인적 산출의 실제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치평가에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여성노동의 가치평가는 여성노동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노동표준이 없고, 개별 가정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행자에 따라 얻어지는 성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문숙재, 1990).

따라서 여성들의 무보수 노동의 가치 인정과 관련하여 첫째, 가사노동을 생산노동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 둘째, 가사노동을 화폐적 가치로 평가하는 문제, 셋째, 화폐적 가치의 실용성 문제로 실제 상황과 법률제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더욱이 농업노동에서 여성들이 참여한 부분에 대한 기여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노동을 평가하더라도 시간은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족농에서 여성의 노동공급을 이해하는 것은 삶의 터전으로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족농의 존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Kim, 2002). 특히, 가족농에 있어서 여성이 노동력의 원천으로서 필요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가족농들이 노동력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영옥, 2001; 박현채, 1984; 정영일 1984; Lee, Jenkins & Westaby, 1997; Saupe & Bently, 1994).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농사일에 사용하고 있지만 무급노동자로 분류되어 적절한 임금률 설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적절한 임금률의 부재가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된 장애로 대두되고 있다(최윤지, 유소이, 최현자, 2002).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2년 10월 25일~11월 13일까지 여성농업인 노동가치평가연구를 위하여 농가주부와 경영주를 대상으로 농가의 일반사항, 생산비, 생활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공주, 순천, 대구 20~30km 근교의 평야지역을 선정하여 미백농가를 중심으로 부부 공동으로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180 농가의 주부 및 남편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 가치평가방법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추정방법으로 총합적 대체비용법, 전문가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김선희, 1990; 김정희, 1993) 및 shadow wage를 추정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Kim, 2002; Zick & Bryant, 1983).

1) 총합적 대체비용법

이방법은 농촌가정에서 이뤄지는 가사노동의 전부를 가정부가 대신하여 주고, 농업노동 역시 노동시장에서 구입한 고용인이 수행하는 경우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WF_v = (T_h \times W_h) + (T_a \times W_a)$$

T_h : 가사노동시간
 T_a : 농업노동시간
 W_h : 가정부 시간당 임금
 W_a : 시간당 농업기준 노임

2) 전문가 대체비용법

이 방법은 먼저 가사노동을 직업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고, 각 작업을 해당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때 든 비용을 계산한다. 그리고 농업노동에 사용한 시간 또한 노동시장에서 구입한 고용인에게 의뢰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여 가사노동의 비용과 합하여 산정하게 되며, 계산방법은 다음 식과 같다.

$$WF_v = \sum(T_{ih} \times W_{ih}) + (T_a \times W_a)$$

T_{ih} : 가사작업 i에 소요되는 시간
 T_a : 농업노동시간
 W_{ih} : 가사작업 i 해당 전문가 임금
 W_a : 시간당 농업기준 노임

3) 기회비용법

기회비용법은 여성농업인이 남편과 함께 자가농업에 종사하는 대신, 농촌지역에 한정하여 노동시장에서 유급노동에 참여하였을 경우에 얻게 되는 소득을 계산한다. 또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농업노동의

가치와 동일시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다.

$$WF_v = (T_h \times T_a) \times W_a$$

T_h : 가사노동시간
 T_a : 농업노동시간
 W_a : 시간당 농업기준 노임

4) Shadow wage를 이용한 추정방법

일반적으로 여성의 농업노동이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시장임금률보다 생산함수와 관련하여 노동의 한계생산성 또는 shadow wage를 적용하여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Kim, 2002).

이 방법은 여성농업인이 수행하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과 추정된 shadow wage(농업노동의 경우 한계생산물의 가치를²⁾, 가사노동의 경우 유보임금³⁾)를 이용하여 노동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Kim, 2002; Zick & Bryant, 1983).

$$WF_v = (T_h \times W^*) + (T_a \times MP_L)$$

T_h : 가사노동시간
 T_a : 농업노동시간
 W^* : 유보임금(shadow wage)
 MP_L : 한계생산물가치(shadow wage)

2) 농업노동의 Shadow wage인 한계생산물가치는 농업노동시간이 농업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을 생산함수로부터 추정하고, 추정된 계수에 소득과 시간비용을 곱하여 얻어진다(Skoufias, 1994).

3)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shadow wage는 Heckman모형을 적용하여 추정되었다. Heckman 모형은 노동수요식(시장임금율)과 시장노동시간식의 추정에서 얻어진 각각의 계수들을 조합하여 노동공급식(유보임금)의 계수들을 계산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추정된 노동공급식을 계산하면 개별 주부의 유보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Zick & Bryant, 1983).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경우 시장노동에 종사하는 대신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임금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추정된 농업노동의 shadow wage와 농업노동시간을 적용하여 농업여성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평가기준

모형평가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미백농가를 중심으로 농가부부(180농가)의 1일 생활시간을 조사하였으며 개별 모형에서 사용된 임금률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평가모형 추정에 필요한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시간은 농가부부의 생활시간을, 모형별로 임금률은 통계자료와 조사된 지역노임 또는 추계된 2차 자료를 적용하였다. 총합적 대체비용법은 농업노임의 경우 지역노임과 농업 숙련종사자(여성) 임금을, 가사노동의 경우 2가지 유형(주부대체임금 I, II)의 가정부임금을 적용하여 4가지 조합으로 추계하였다. 주부대체임금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직으로 간주하여 주부에게 적용할 경우 지불되는 비용으로서 전체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주부대체임금 I이 주부 무급노동 평균임금법에 근거하여 추계된 반면 주부대체임금 II는 가사평균임금법에 의해 추계되었다. 이러한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주부대체임금 I이 주부대체임금 II에 비해 32% 정도 높게 추계되었다(김준영, 2001). 전문가대체비용법은 농업노동의 경우 지역노임과 여성 농업숙련자임금을, 가사노동의 경우 주부 무급노동의 유형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2가지 조합으로 추계하였다. 가사노동의 유형별 평균임금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의 주부 무급노동의 유형별 평균임금을 적

용하였으며, 크게 '가정관리' 부문과 '가족보살피기' 부문으로 유형화되고 있다(김준영, 2001). 가정관리 부문에서는 식사준비 및 설거지,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세탁 및 세탁물 널기, 집안청소 및 기타, 집수리, 시장보기, 가계부정리, 가정계획, 기타 가사일로 영역을 세분화하였으며, 가족보살피기 부문에서는 미취학 아이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돌보기, 배우자 및 부모보살피기 등의 영역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기회비용법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모두를 지역노임과 농업 숙련종사자(여성) 임금을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끝으로 shadow wage 추정법은 농업노동의 경우 농업생산함수에서 추정된 한계생산물가치를 농업노동의 shadow wage로, 가사노동의 경우 유보임금(shadow wage)을 계산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농가의 일반적 특성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을 농사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국한하고 있으며(김경미, 최윤지, 조현숙, 2001), 주로 쌀농사(미백농가)를 전업으로 삼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성농업인의 노동

<표 1>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평가를 위한 산출기준

평가방법	산출기준
총합적대체 비용법	·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시간 : 농가의 생활시간조사
	· 시간당 농업노임 : 지역노임, 농업 숙련종사자(여성)임금 · 시간당 가정부임금 : 주부대체임금 I & 주부대체임금 II
전문가대체 비용법	·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시간 : 농가의 생활시간조사
	· 시간당 농업노임 : 지역노임, 농업 숙련종사자(여성)임금 · 가사작업 해당임금 : 주부 무급노동의 유형별 시간당 평균임금
기회비용법	·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시간 : 농가의 생활시간조사
	· 시간당 농업노임 : 지역노임 & 농업 숙련종사자(여성) 임금
shadow wage 추정법	·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시간 : 농가의 생활시간조사
	· 시간당 농업노임 : 농업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추정 · 시간당 가사노동임금 : 가사노동의 유보임금 추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된 농가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농가 부부의 평균연령은 남편이 56세, 부인이 52세로 나타났으며, 가족은 평균 3.6명이며, 주택평수는 약 67평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소득은 약 1,540만원 정도인 반면, 생산비는 1,9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험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을 축소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전체 미액농가 중 중간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편과 부인 모두 농업숙련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력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고졸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2>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N = 남편 180, 부인 = 180)			
특성	구분	평균(표준편차)	빈도(퍼센트)
연령(세)	남편	55.61(9.82)	
	부인	51.60(9.67)	
소득(만원/연)	농업	1246.62(1332.86)	
	농외	292.23(848.11)	
생산비(만원/연)		1910.91(6143.71)	
가족규모(명)		3.57(1.46)	
주택평수(평)		66.66(73.96)	
직업	남편	기술공/준전문가	4(2.3)
		사무종사자	1(0.6)
		서비스종사자	2(1.1)
		농업숙련종사자	167(92.8)
	부인	사무종사자	4(2.3)
		판매종사자	1(0.6)
교육수준	남편	국졸	57(31.7)
		중졸	43(23.9)
		고졸	75(41.6)
		대졸이상	5(2.8)
부인	국졸	80(44.4)	
	중졸	36(20.0)	
	고졸	63(35.0)	
	대졸이상	1(0.6)	
자가용	있다	97(53.9)	
	없다	83(46.1)	

2.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하루 중 남편과 부인의 농업노동시간⁴⁾과 가사노동시간⁵⁾을 살펴보면 농업노동의 경우 남편은 7.5시간을 부인은 5.3시간을 사용하였으며, 가사노동의 경우 남편은 37분을, 부인은 3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인의 농업노동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은 여전히 부인의 몫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노동시간은 부인이 남편보다 1시간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진흥청(1999)에서 조사된 미액농가 주부의 농번기(5월) 농업노동시간(8.4시간) 및 가사노동

<표 3> 농업노동 및 가사노동시간⁶⁾ (분/일)

	구분	평균(표준편차)
남편	농업노동	451.06(189.30)
	가사노동	37.00(47.67)
부인	농업노동	319.06(192.66)
	가사노동	232.06(125.49)

- 남편과 부인이 수행한 농업노동시간의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농구정리, 벼건조, 수확, 건조, 탈곡, 선별포장, 운반 저장 및 기타의 작업영역 등이 포함된다.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남편과 부인의 시간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각각 하루 평균 11.1분, 30.1분, 53.8분, 1.1분, 0.3분, 3.4분, 19.1분, 33.2분으로, 부인의 경우 각각 하루 평균 2분, 10.8분, 34.5분, 1.7분, 4.7분, 0.4분, 6.1분, 25.9분으로 나타났다.
- 남편과 부인이 수행한 가사노동시간의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식사준비, 세탁, 청소, 집관리, 기타가사일, 시장보기, 미취학아이돌보기, 초·중·고생 돌보기 등의 작업영역에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평균 0.2분, 0.3분, 6.2분, 5.4분, 19.6분, 2.1분, 1.3분, 1.3분 등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식사준비, 간식만들기, 세탁, 청소, 집관리, 기타가사일, 시장보기, 미취학아이돌보기, 초·중·고생 돌보기, 부모돌보기, 기타가족돌보기 등의 작업영역에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시간은 각각 평균 117.6분, 1.8분, 26.7분, 32.4분, 3.5분, 32.5분, 3.1분, 5.8분, 4.7분, 0.3분, 3.6분으로 나타났다.
-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평균보다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약 50%의 응답자가 가사노동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가사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210분까지 가사노동에 시간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평가액(원/일)^{7,8)}

평가방법	산출기준임금률	평가액		
		일별	월별	연별
총합적 대체비용법	지역노임-주부대체임금 I	37,290원	1,133,616원	13,603,392원
	농업숙련자노임-주부대체임금 I	35,404원	1,076,282원	12,915,379원
	지역노임-주부대체임금 II	42,867원	1,303,157원	15,637,882원
	농업숙련자노임-주부대체임금 II	41,041원	1,247,646원	14,971,757원
전문가 대체비용법	지역노임-가사작업 해당임금	37,470원	1,139,088원	13,669,056원
	농업숙련자노임-가사작업 해당임금	35,644원	1,083,578원	13,002,931원
기회비용법	지역노임	37,507원	1,140,213원	13,682,554원
	농업숙련자노임(여성)	31,350원	953,040원	11,436,480원
shadow wage 추정법	shadow wage	23,141원	703,486원	8,441,837원

시간(4.4시간) 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농업인을 취업주부로 간주할 경우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하루 3~4시간으로 추계한 홍향숙과 박수경(1994), 한경미(1989), 홍성희(1993), 문숙재(200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도 가사노동시간을 0.67시간으로 추계한 문숙재(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미국, 일본, 핀란드의 경우 가사노동시간 비중은 각각 여성이 3.2시간, 4.05시간, 3.6시간, 남성이 1.83시간, 1.8시간, 1.95시간으로 추계되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이기영, 2001).

3. 여성농업인 노동가치 평가액

이론적 모형에서 제시한 4종의 노동가치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추계된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평가액은 〈표 4〉와 같다. 첫째,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여성농업인의 일별 노동가치는 4가지 조합에 따라 약 3만 5천원에서 4만 3천원까지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의 월소득임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하면 일별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는 약 3만 5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약 110만원의 월소

득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회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3만 1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약 95만원에서 114만원의 월소득으로 계산된다. 넷째,

7)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농업노동의 경우 지역노임, 숙련노임, 추계된 shadow wage(한계생산물가치)를, 가사노동의 경우 대체임금 I과 II, 가사작업임금, 추계된 shadow wage(유보임금)를 적용하였음. 농업노동가치평가에 사용된 임금자료 중 지역노임은 직접조사(3,750원/일)로 수집하였으며, 숙련노임은 노동부자료(3,415원/시간)를, shadow wage는 농업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2,912원/시간)를 추정하여 사용하였음. 가사노동가치평가에 사용된 임금자료 중 대체임금 I과 II는 2가지 유형(4,478원/시간, 5,919원/시간)으로 추계된 시간당 주부대체비용을, 가사작업임금은 노동부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주부 무급노동의 유형별 시간당 평균임금(김준영, 2001)을, shadow wage는 주부의 유보임금(1,983원/시간)을 추정하여 적용하였음. 가사노동의 유형별 시간당 평균임금은 가정관리부문은 식사준비 및 설거지, 간식 및 저장식품만들기, 세탁 및 세탁물 널기, 집안청소 및 기타, 집수리, 시장보기, 가계부정리, 가정계획, 기타 가사일로 영역을 세분화하여 각각 4,478원, 3,298원, 3,593원, 3,996원, 4,944원, 4,478원, 7,330원, 10,483원, 4,478원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였으며, 가족보살피기 부문에서는 미취학 아이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돌보기, 배우자 및 부모보살피기 등의 영역에 대하여 각각 8,398원, 8,398원, 7,022원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였음.

8) 월별 평가액은 일일 노동가치에 30.4일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국민계정내 가사노동 가치평가시 월별 가치평가시 GDP와의 비교를 위해 1년 365일을 12달로 나눈 30.4일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문숙재·윤소영·김은희, 2002).

shadow wage 추정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2만 3천원으로, 월소득으로 계산하면 70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shadow wage 추정법을 적용한 경우 소득에 대한 조사대상자 응답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노동가치평가액이 다소 낮게 추정된 것으로 사료된다.⁹⁾ 또한 농업숙련자임금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시장임금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가 낮게 추계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전체적으로 조사된 생활시간의 시점이 농번기(5월)가 아님을 감안할 때 농번기의 경우 농업노동시간이 더 증가하여 노동가치평가액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이 제공하고 있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총합적 대체비용법, 전문가 대체비용법, 기회비용법 및 shadow wage 추정법을 적용하여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평가액을 제시하였다. 첫째,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여성 농업인의 일별 노동가치는 4가지 조합에 따라 약 3만 5천원에서 4만 3천원까지로 계산되었으며, 두 번째로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의하면 일별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는 약 3만 5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추계되었다. 셋째, 기회비용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3만 1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넷째, shadow wage 추정법을 적용한 경우 일별 노동가치는 2만 3천원으로 추계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여 여성이 농업노동에 기여한 가치를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대개의 여성농업인은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직업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가치 평가모형이 제시된다 해도 현재 노동시장에 형성된 일용임금 수준의 저임금 구조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다. 이에 대한 현행법상에서의 보

완적인 조치는 여성농업인이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는 방안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농가 부부간 명의 이전이 되더라도 양도, 증여 혹은 상속에 해당하여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노동가치 평가모형에 의한 여성농업인의 소득 기여도 평가분은 역으로 농가의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 감면의 타당한 근거를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농업인이 제공하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는 기타 농어민연금, 손해보험 판정 등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의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 농가도우미 등 정책지원 사업에서 우선 혜택을 주는 방안, 평등한 농가부부상 제정 등으로 해외연수의 혜택을 주는 방안, 농가 부부를 법인으로 인정하여 소규모 농외소득 사업 창업자금 지원방안 등의 여성농업인의 지위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는 이혼결정이 증가추세에 있음에 직면할 때 현실적으로 여성노동의 가치평가는 경제적으로 여성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이혼청구시 합당한 위자료산정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혼가정에 있어서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여성과 부양자녀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여성이 가구주가 되고 있는 편모가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자녀양육의 어려움 외에도 빈곤의 여성화를 다소 둔화시켜 사회적인 안정을 모색하는데 부분적으로나마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첫째, 여성농업인 노동가치 평가시 적용되는 임금률에 있어서 조사자료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지역노임의 경우 현재 농촌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제노임을 조사하였고, 농업노동의 shadow

9) 농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1년 평균 농가소득이 연간 총남은 23,671,481원, 전남은 20,627,461원, 경북은 23,746,170원으로(농림업주요통계, 2002), 본 연구에서 조사된 평균소득(약 1,539만원)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wage는 조사된 소득과 생산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자료가 요구된다. 특히, 농업 소득과 생산비 자료가 기억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농업소득과 생산비 등에 의거해서 농업노동의 shadow wage를 추정하고 추정된 농업노동의 shadow wage를 기준으로 여성농업인 가사노동의 shadow wage를 추정하기 때문에 조사자료의 정확성이 추정된 shadow wage의 정확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업소득과 생산비 자료 조사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정된 임금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료조사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사료된다. 둘째, 농업노동은 일반 근로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과 다르게 작목별로 다양한 작업유형과 시간사용유형을 보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작목별로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각 작업단계별로 수행되는 노동의 질적 측면이 상이한 것을 감안할 때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 평가시 수행되는 노동의 질적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함이 보다 정확한 노동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전문가대체비용법을 적용시 가사노동은 작업분야별 임금이 추계되어 있어 적용이 가능하지만 농업노동의 경우 작업단계의 세분화에 따른 임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노동을 세분화하여 작업별 임금을 파악하고 추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추정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작업단계별로 농업노동을 세분화하여 임금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최근 가사노동 등의 무급노동 가치를 평가하여 국민계정에 산입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가치를 산정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의 특성상 여성농업인의 노동은 크게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분리되며, 그중 농업노동부분의 생산성은 국민계정에 포함되지만 여성농업인이 무급노동자로 간주되어 생산부분에 대한 가치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전체 농업소득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파악하여 생산활동으로서 농업에 기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가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 도시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위성계정을 통해서 국민계정에 산입하려는 노력과 맥을 함께 하여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가치를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도시주부와 가사노동수행의 양적 질적 측면이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사노동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경미(1997). 농가의 가사분담 실태와 생활만족도. *농촌생활과학*, 19(1), 19-23.
- 김경미, 최윤지, 조현숙(2001).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부여를 위한 시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연구소 논집*, 40, 87-104.
- 김선희(1990).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2), 73-90.
- 김영옥(2001). 여성농업인의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옥, 김이선(1999).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옥, 양승주(2000).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시안). *농림부*.
- 김외숙, 이기춘(1988).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3), 171-182.
- 김이선(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 -충청도 3개 마을 사례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인숙(1997). 농가주부 및 남편의 노동에 대한 화폐적 가치평가 연구. *서원대학교논문집*.
- 김애실(198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서울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3(4), 23-48.

- 김정희(1993).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경제적 가치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4), 37-51.
- 김정희(1999).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기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9-30.
- 김주숙(1979). 한국의 농촌여성. 이화여대 한국여성 연구소: 여성학. 이화여대출판부.
- 김주숙(1981). 농촌여성문제 소고. *한국사회학*, 15, 49-60.
- 김주숙(1982). 농촌여성의 농업생산 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농촌경제*, 5(2), 34-49.
- 김주숙(1985). 해방 40년과 농촌여성지도정책 고찰, 변형윤 외: *분단시대의 한국사회*. 도서출판 까치.
- 김준영(2001). 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및 제도적 반영의 종합적 연구. 통계청 주최, 제 7회 통계의 날 기념세미나(2001. 9)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결과-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와 생활시간 활용 및 배분-』, 13-36.
- 김태홍(2001).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여성부·UNDP주최, 여성의 무급노동 평가와 정책화를 위한 세미나(2001. 4. 27). 45-107.
- 노동부(2000).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농림수산부(1979, 1985, 1988). 농가경제조사.
- 농림부(2002). 농림업주요통계. <http://www.maf.go.kr>.
- 농촌생활연구소(1997). 시험연구보고서.
- 농촌생활연구소(1998). 시험연구보고서.
- 농촌진흥청(1999). 시간으로 본 농가부부의 생활.
- 문숙재(1990).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와 세계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새가족법의 정착을 위하여-. *정무장관(제2)실 정책자료* 90-6.
- 문숙재(2001). 가사노동가치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의 기초분석. 통계청 주최, 제 7회 통계의 날 기념세미나(2001. 9)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결과-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와 생활시간 활용 및 배분-』, 37-56.
- 문숙재, 정영금(1997).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41-52.
- 문숙재, 윤소영, 김은희(2002). 무보수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61-176.
- 박현채(1984).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들베게.
- 이기영, 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4), 11-26.
- 이기영(2001). 국민생활시간 활용의 국제비교. 통계청 주최, 제 7회 통계의 날 기념세미나(2001. 9)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 결과-주부의 가사노동가치 평가와 생활시간 활용 및 배분-』, 57-82.
- 이미경(1983). 농촌빈곤과 농촌여성.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편: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 민중사.
- 이호철, 최수영(2001). 지역 여성농민의 실태와 정책적 대안 제시.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 *경상논집* 29(1), 39-62.
- 정기환(1997). 농가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영금(1989).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영일(1984). 한국농업문제의 새로운 인식. 들베게.
- 조형(1981).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한국사회개발연구*, 5, 207-274.
- 최명숙(1986).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산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지, 유소이, 최현자(2002).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에 관한 소고.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1), 25-40.
- 최재석(1988). 한국농촌사회 변동연구. 일지사.
- 통계청(2000). 1999년 농업기본통계조사 결과.
-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13.
- 한국여성개발원(1984).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 허경옥(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 분석: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7.

- 홍성희(1993). 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55-68.
- 홍향숙, 박수경(1994).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49-60.
- Becker, G. S.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Berk, R. A. (1980). The New Home Economics: An agenda for sociological research. In S. F. Berk (ed). *Woman and household labor*. Beverly Hills, CA: Sage Pub.
- Bryant, W. K.(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Univ. Press.
- Gronau, R. (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6), 1099-1023.
- Kim J.S.(2002). Child labor and household time allocation in US family farm household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Lee, B.C., Jenkins, L.S. & Westaby, J.D.(1997). Factors influencing exposure of children to major hazards on family farms. *Journal of Rural Health*, 13(3), 206-215.
- Matsushima, C. (1981). Time-input and household work-output studies in Japan-present stat and future perspect.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5(3), 199-218.
- Mincer, J. (1962).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aspects of Labor Economics, H. G. Lewis, ed., Univ. National Bureau of Economics Research Conference Series No. 14.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Sanik, N. M (1977). A division of household work, decade comparison 196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 Saupe, W.E. & Bentley, S. (1994). Introduction to the survey, Status of Wisconsin Family-Special edition: The 1993 ATFFI Family Farm survey. Depart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y and Family Farm Institut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Skoufias, E. (1994). Using shadow wage to estimate labor supply of agricultural househol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6, 215-227.
- Zick C. D. & Bryant, W. K. (1983). Alternative strategies for pricing home work tim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133-144.

(2003년 4월 29일 접수, 2003년 7월 1일 채택)